

시 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2068호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규 칙

- 인천광역시규칙 제3266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2
- 인천광역시규칙 제3267호 인천광역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6
- 인천광역시규칙 제3268호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건설 규칙 전부개정규칙 16
- 인천광역시규칙 제3269호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0

훈 령

- 인천광역시훈령 제1246호 인천광역시 군·구 행정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38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54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42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55호 오류3 지적재조사지구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45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507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4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508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4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509호 압류자동차 공매결과 공고 4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511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공고·열람 5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512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5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515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5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534호 2022년 제 9차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5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53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공고·열람 6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53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65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2-228호 보상계획공고 66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21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0

회 람									
--------	--	--	--	--	--	--	--	--	--



규 칙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9월 26일

인천광역시장 유 정 복

인천광역시규칙 제3266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인천광역시 본청·시의회·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를 “인천광역시”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본청·시의회·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인천광역시”를 “시”로 한다.

제3조 중 “인천광역시 본청·시의회·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를 “시”로, “포함한다), 인천광역시”를 “포함한다), 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및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의2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3제3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산하기관에”를 “단체에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을 “제4호 각 목의”로, “산하기관”을 “단체”로 한다.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15조제2항 본문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0조의2 본문 중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21조제5항제3호 중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중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6, 제21조 등과”를 “제21조와”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시 감사관. 다만, 소방본부(소방서·소방학교·119특수대응단·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포함한다) 및 상수도사업본부는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2. 출장소: 감사업무 지원부서의 장
3.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의정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의 장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제13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2022.5.19. 시행) 되어 법률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제13조 및 제16조 삭제)
- 나. 규정 삭제에 따른 약칭을 정비함.(제2조, 제3조 및 제10조의2)
- 다.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을 정비함.(제13조의3제4호·제5호, 제15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 라. 삭제된 이해충돌방지규정과 관련된 별지서식을 삭제함.(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인천광역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9월 26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규칙 제3267호

인천광역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8장의 제목 “지방소득세(소득분)”를 “지방소득세”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2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 중 “지방소득세(소득세분)”를 “지방소득세”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29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0조제1항 및 제103조의9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3조의27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

접수번호	신고일자	성명(법인명)	주 소		소득세	세율	지방소득세	납부일자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담 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24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

일련번호	납세번호	납부구분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귀속연도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방소득세 합계	수납금액	수납일
	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지 주소			고지 주소지					
	양도 물건					부과일	납기일	자료구분	비 고		
합 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25호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

납세번호	납부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성명	전 화 번 호	총 과세표준	안분율	지방소득세	합계세액	수납금액	
주 소		부과일자		사 업 기 간		총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가산세	
법인등록번호	현 소 재 지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26호서식]

일련번호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특별징수의무자 주소					기관명(사업장명)																			
월별	납부일자	근로소득				이자소득				기타(배당)소득				보통징수분						결재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증감	조사월일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가산세	합계	결정일자	납부일자	담당자	담당	과장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정상여																								
기타																								
계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27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동)

과세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28호서식]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동)

과세 번호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울	본세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9호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동)

과세 번호	접수 일자	법인명	주 소		법인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법 인 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에 맞춰 제명을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제명)

나. 지방소득세의 인용조항 및 용어를 정비(제8장의 제목, 제29조, 제30조, 제31조 및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 법인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세분) → 지방소득세

항에 따른 확대궤간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확대궤간은 차량의 고정차축거리, 차륜가동여유치 등 노선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절 곡선

제3조(선로의 곡선반경)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로의 곡선반경의 크기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곡선반경 이상으로 한다.

제4조(캔트)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캔트의 크기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른다.

제5조(캔트의 체감거리) 영 제12조제4호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중요한 지장물의 저축 등으로 선형상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복심곡선의 설치범위)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방향의 두 개의 곡선인 선로가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심곡선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른다.

제3절 건축한계

제7조(직선구간의 건축한계) 영 제20조에 따른 선로가 직선인 구간의 건축한계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곡선구간의 건축한계)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곡선구간의 건축한계 확대치수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라 산정된 치수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를 제외한 상부의 건축한계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절 궤도

제9조(궤도의 중심 간격)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궤도의 중심 간격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궤도 사이에 기둥, 벽, 방음시설, 가공전차선 지주, 신호기 지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큼 궤도의 간격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10조(레일) 영 제24조에 따른 레일의 중량은 미터당 50킬로그램 이상으로 한다.

제11조(도상의 두께)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도상의 두께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술상 또는 지형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상의 두께를 달리하거나 도상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절 구조물

제12조(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 ① 영 제26조에 따른 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은 3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중앙기둥이 설치되어 대피통로와 병행하는 구간은 200밀리미터(정거장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50밀리미터를 말한다)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조물과 건축한계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한계 외의 여

유공간은 8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복선타널구간과 같이 양측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5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도로면 등으로부터의 간격)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도로면과 지하구조물 윗면과의 사이 또는 도로면과 고가구조물 밑면과의 사이에 확보해야 하는 깊이 또는 높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면과 지하구조물 윗면과의 사이의 깊이: 1.5미터 이상. 다만, 개구부 등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도로면과 고가구조물 밑면과의 사이의 높이: 4.5미터 이상.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4.5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하천의 밑을 지나는 터널의 윗면과 하천의 계획준설면 사이의 높이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높이 이상으로 한다.

제3장 전기설비

제14조(전차선로)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차선의 가선방식, 레일 윗면으로부터의 높이 및 편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차선의 가선방식: 다음 각 목에 따른 방식. 다만, 열차의 속도 및 노반의 형태, 부하전류 특성 등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정할 수 있다.

가. 지상부: 커티너리 조가식

나. 지하부: 강체가선식

2. 레일 윗면으로부터 전차선로까지의 높이: 다음 각 목에 따른 높이. 다만, 차량기지, 개구부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지상부: 5,000밀리미터 이상 5,400밀리미터 이하

나. 지하부: 4,250밀리미터 이상

3. 전차선의 편차: 레일 윗면에 수직인 궤도 중심으로부터 좌·우로 각각 250밀리미터 이내

제4장 경량전철에 관한 특례

제15조(궤간 및 안내면 간 거리와 그의 공차에 관한 특례) ① 영 제74

조제1항에 따른 경량전철 중 철제차륜이 아닌 다른 형식의 경우 궤간의 치수는 차량의 구조, 궤도 등의 특성 및 열차운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궤간의 공차는 크로싱의 경우 증(增) 3밀리미터, 감(減) 2밀리미터, 그 밖의 경우 증 10밀리미터, 감 2밀리미터를 허용하되, 이에 따른 허용치에 확대궤간을 더한 치수는 30밀리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형유도전동기형식 등 차륜 답면이 소형인 차량의 경우 차량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다른 형식은 시스템 특성에 따라 열차안전운행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확대궤간 및 안내면 간 거리확대에 관한 특례) ①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 확대궤간의 치수는 20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경 300미터 이하의 곡선에 두어야 하며, 확대궤간의 치수는 다음 산식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차량형식 또는 차축 특성을 고려하여 열차안전운행 및 승차감 향상 등을 위하여 산식 및 치수를 조정할 수 있다.

$$S = \frac{(1.5B)^2}{8R} - S'$$

S : 확대궤간(밀리미터) B : 고정차축거리(미터)
R : 곡선반경(미터) S' : 0 ~ 4밀리미터

② 제1항에 따른 확대궤간은 곡선부분의 안쪽 레일에 두어야 한다.

제17조(확대궤간 및 안내면 간 거리확대의 체감거리에 관한 특례)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확대궤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체감시켜야 한다.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그 곡선 전체의 거리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제20조에 따른 캔트의 체감거리와 같게 하되, 캔트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곡선의 시작점·끝점으로부터 4미터 이상의 거리

② 제1항의 확대궤간의 체감거리는 반경이 다른 같은 방향의 곡선이 접속하는 경우에는 반경이 큰 곡선 안에서 확대궤간 또는 안내면 간 거리 확대의 차를 제1항에 준하여 체감하여야 한다.

제18조(캔트의 크기에 관한 특례) 영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

전철의 캔트의 크기는 제4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르되, 본선의 경우에는 최대 150밀리미터, 정거장의 경우에는 최대 30밀리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캔트의 체감거리에 관한 특례) 영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캔트의 체감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그 곡선 전체의 거리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제20조에 따른 완화곡선 이상의 거리

제20조(완화곡선의 삽입기준 및 길이에 관한 특례) ① 영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완화곡선의 길이는 다음 산식으로 산정한 길이 이상이 되도록 한다.

$$L = 8.75VC$$

L : 완화곡선 길이(미터)

V : 열차의 주행속도(킬로미터/시)

C : 표준 캔트량(밀리미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으로 산정한 길이까지 완화곡선의 축소가 가능하며 본선의 경우에 곡선반경이 800미터 이상인 곡선에는 완화곡선을 삽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L = 6.94VC$$

L : 완화곡선 길이(미터)

V : 열차의 주행속도(킬로미터/시)

C : 표준 캔트량(밀리미터)

제21조(직선의 삽입 길이에 관한 특례) ① 영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 식 경량전철의 본선의 경우에 인접하여 두 개의 곡선이 있는 선로에는 캔트 체감 후에 15미터 이상의 직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최대차량길이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대방향의 두 개의 곡선인 선로가 인접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형상 직선을 삽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때에는 직선을 삽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향의 두 개의 곡선인 선로가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심곡선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기부에 연속하는 경우와 측선의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선을 삽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본선의 기울기 한도에 관한 특례) 영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 식 경량전철의 본선의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곡선인 선로에 기울기를 두는 경우에는 적절한 곡선보정을 한 기울기를 한도로 한다.

1. 정거장 밖의 지역에 있는 경우: 1천분의 60.
2. 정거장 안에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울기
 - 가. 정거장내 차량을 유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1천분의 3
 - 나. 제1호 외의 경우: 1천분의 8
3. 차량기지: 1천분의 3

제23조(측선의 기울기 한도에 관한 특례) 영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측선의 기울기 한도는 제22조에 따른다.

제24조(종곡선의 삽입기준 및 길이에 관한 특례) 영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경우 선로의 기울기가 변하는 경우로서 인접 기울기의 변화가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경 2천미터 이상의 종곡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속도 증가시 부상에 대한 안전 및 차량저판 기계와의 저촉을 고려하여 1천5백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제25조(곡선구간의 건축한계에 관한 특례) ① 영 제76조에 따른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의 곡선구간의 건축한계 확대치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치수 이상으로 하며, 최대차량길이 이상의 거리에서 체감시켜야 한다.

$$W = \frac{L^2}{8R} \text{ (내측)}$$

$$W = \frac{M(M+L)}{2R} \text{ (외측)}$$

W : 궤도중심의 각 측에 있어서 확대할 치수(밀리미터)

L : 차량의 대차중심간 거리(미터)

M : 대차중심에서 차량끝단까지 거리(미터)

R : 곡선반경(미터)

② 그 밖에 다른 차량형식의 곡선구간 건축한계의 확대치수는 차량의 길이 및 대차중심간 거리 등 차량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전차선로의 기울기에 관한 특례) 영 제81조에 따른 경량전철 전차선의 레일면에 대한 기울기 한도는 한 경간을 기준으로 본선에서 1천

분의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하로 할 수 있다.

제27조(비상통신장치 설치에 관한 특례) 영 제82조에 따라 경량전철의 승강장에는 승객이 역무실 또는 종합관제실과 양방향 통화를 할 수 있는 비상통신장치를 승강장의 바닥에서 1.5미터 높이로 한 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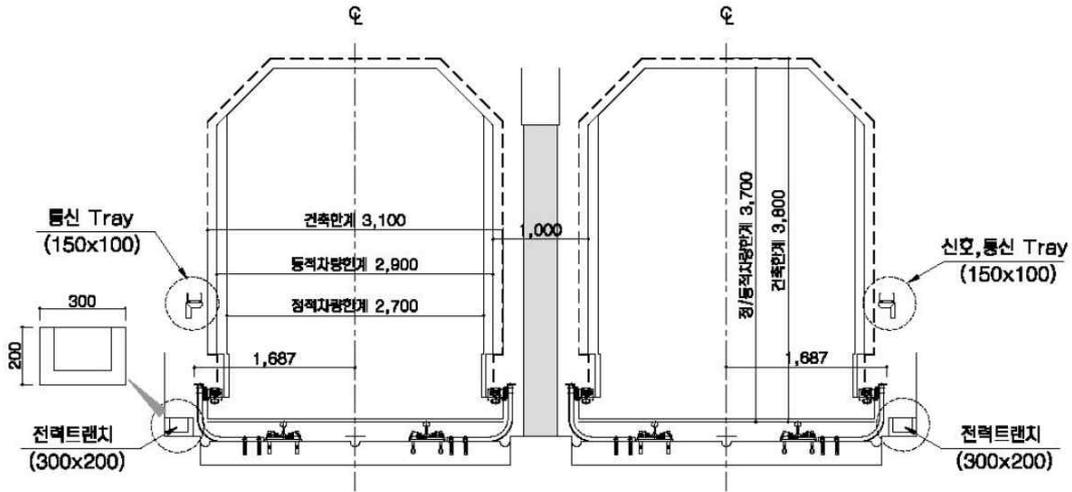
선로의 설계기준

구분		철제차륜 중량전철 (인천도시철도 1호선)	철제차륜 경량전철 (인천도시철도 2호선)	비고
확대궤간		$S = 2,205/R - S'$ • S : 확대궤간(mm) • S' : 조정치(5mm) • R : 곡선반경(m) • 곡선반경 500m이하에 적용	$S = 900/R - S'$ • S : 확대궤간(mm) • S' : 조정치(1~4mm) • R : 곡선반경(m) • 곡선반경 800m이하에 적용	제2조 관련
곡선반경	본선	250m (부득이한 경우 180m)	100m	제3조 관련
	정거장	600m (부득이한 경우 400m)	600m (부득이한 경우 300m)	
	측선	120m	50m	
	분기부대	150m	50m	
켄트		$C = 11.8V^2/R - C'$ • C : 표준켄트량(mm) • R : 곡선반경(m) • V : 열차속도(km/Hr) • C' : 부족켄트량(0~75mm)	$C = 11.8V^2/R - C'$ • C : 표준켄트량(mm) • R : 곡선반경(m) • V : 열차속도(km/Hr) • C' : 부족켄트량(0~100mm)	제4조 관련
복심곡선 범위		$(R_1 \times R_2) / (R_1 - R_2) \geq 1,200$ • R ₁ , R ₂ : 인접곡선 반경(m) (단, R ₁ > R ₂)	$(R_1 \times R_2) / (R_1 - R_2) \geq 1,200$ • R ₁ , R ₂ : 인접곡선 반경(m) (단, R ₁ > R ₂)	제6조 관련
곡선구간의 건축한계 확대치수		$W = 20,000/R$ • W : 확대치수(mm) • R : 곡선반경(m)	외측 $W = 17,000/R$ 내측 $W = 18,000/R$ • W : 확대치수(mm) • R : 곡선반경(m)	제8조 관련
궤도중심간격	지상부	3,600mm 이상	3,900mm 이상	제9조 관련
	지하부	3,600mm + b 이상 • b : 중간기둥 또는 벽의 두께(mm)	3,900mm 이상	
	곡선부	표준간격 + 2W 이상 • W : 곡선구간의 건축한계 확대치수(mm)	-	
	차량기지	-	유치선군 4,000mm 이상	
도상두께	콘크리트	125mm (지하구간 550mm)	250mm (F1~RL 450mm)	제11조 관련
	자갈	250mm (지하구간 650mm)	250mm (F1~RL 61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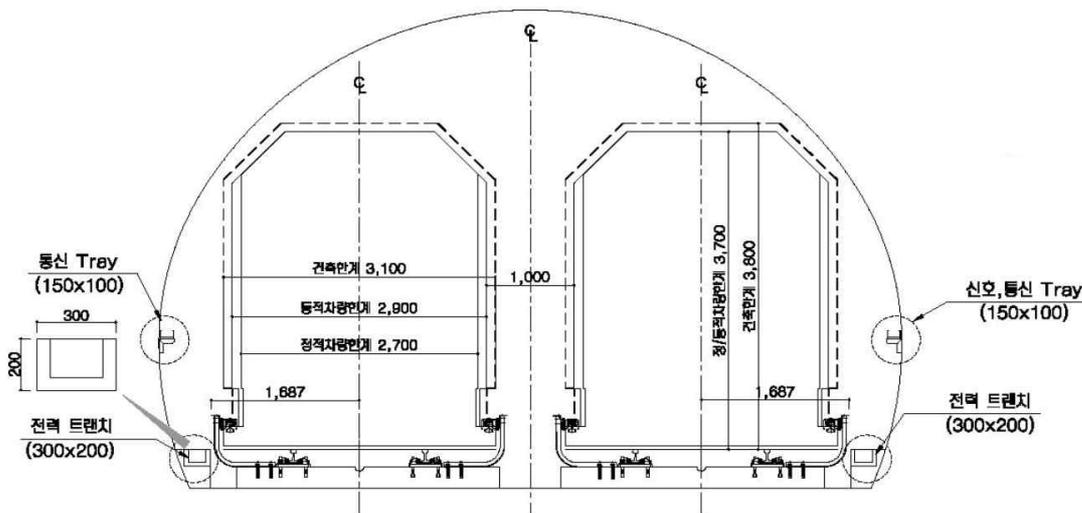
[별표 2]

2.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가. 본선 개착 건축한계



나. 본선 터널 건축한계



◇개정이유

「도시철도건설규칙」 개정(2010.10.8. 시행)으로 경량전철 규모에 맞는 적정 시설을 둘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도시철도 건설기준 등을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도시철도의 건설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맞게 규칙 제명을 변경함.(제명)
- 나. 철제차륜 중량·경량전철의 확대궤간에 관한 설계기준을 규정함.(제2조)
- 다. 철제차륜 중량·경량전철의 곡선(선로의 곡선반경, 캔트 등)의 설계기준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6조까지)
- 라. 철제차륜 중량·경량전철의 건축한계(직선·곡선구간)의 설계기준을 규정함.(제7조, 제8조 및 별표 2)
- 마. 철제차륜 중량·경량전철의 궤도(중심간격, 레일, 도상의 두께 등)의 설계기준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바. 철제차륜 중량·경량전철의 구조물(건축한계 외의 여유공간, 도로면 등으로부터의 간격)의 설계기준을 규정함.(제12조 및 제13조)
- 사. 철제차륜 경량전철의 전기설비 설계기준을 규정함.(제14조)
- 아. 경량전철 규모에 맞는 적정 시설을 둘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함.(제15조부터 제27조까지)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9월 26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규칙 제3269호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축주는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미술작품 구성에 필요한 현장설명서, 건축계획서, 건축물 및 조경 식재계획 관련 상세 이미지 등을 붙여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및 2개 이상의 미술 관련 포털 등에 공모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건축주는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미술·평론·건축·조

경·공공디자인·안전 등 관련 분야(이하 “관련분야”라 한다)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은 공모절차의 공정성과 적절성에 따라 각 심의위원이 10점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미술작품심의회”를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출석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의 이의제기가 있거나 심의회 위원장이 요청한 때에는 공개토론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미술작품”을 “미술작품”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검수단원의 자격)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검수단의 단원(이하 “검수단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문대학교 관련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작품 활동을 1년에 1회 이상 총 5년 이상의 활동을 한 사람

나. 4년제 대학교 관련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작품 활동을 1년에 1회 이상 총 3년 이상의 활동을 한 사람

다. 대학원 관련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하거나 작품 활동을 총 1회 이상 한 사람

라. 관련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대학교 관련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교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검수단원으로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수단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추천을 받은 사람이 검수단원으로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수단원 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제6조제1항 관련)

심의번호		작품제목		
평가기준 및 배점				점수
가격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미술작품설치계약금 사용계획서상 비용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건축주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 합리적인가? 		
예술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미술작품의 조형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형식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내용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환경과 친화적인가? 		
접근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가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능하여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이 있는가? 		
유지·보존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보존계획서상 계획이 적절한가? 		
점수계	100	(일반 심의작품은 여기까지만 표기)		
가산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가? ※ 이하는 공모를 통해 제작·설치되고 공모를 증명한 경우에 한함 		
총점수	(110)			
판 정 (해당사항에 O 표기)	적합	(70)점 이상일 경우		
	부적합	(70)점 미만일 경우		
비고	부결 및 조건부 사유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

신청인	성명	[]공공기관 []민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관리인	성명	[]공공기관 []민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건물	건축구분	[]신축 []증축	위 치
	건축허가일자		
	건물명	용도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 해당시설 중 선택)	설치대상 연면적
미술작품개요	작품명	작가명	
	작가 생년월일	작가 연락처	
	작품종류	작품재료	작품규격
	설치위치(건물 위치 내 상세위치 명기)		작품가액
	심의일자	설치완료일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설치 완료(준공) 확인을 신청합니다.

- 붙 임 1. 심의도서 사진 1부.
2. 설치완료 사진(근경 전·후, 원경 전·후, 작품명패) 1부.
3. 작품대금지급완료 증명(통장사본, 은행입금확인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검수단원 신청서

사진 (3.5*4.5)	성명 (한자)	()	연 락 처	
	생년월일		전자메일	
	주 소			
전문분야	미술[] 평론[] 건축[] 조경[] 공공디자인[] 안전[] 기타관련분야 [] (<i>내용기재</i>)			
검수단원 수행경력				
해당분야 주요경력	<hr/> <hr/> <hr/> <hr/> <hr/> <hr/> <hr/> <hr/>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불임서류

1. 이력서 1부
2. 분야별 회사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전사회 소책자 자료, 졸업증명서 등 경력관련 증명서류 등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15호서식]

검수단원 추천서

추천인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피추천인	전문분야	미술[] 평론[] 건축[] 조경[] 공공디자인[] 안전[] 기타관련분야 [](<i>내용기재</i>)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경력	검수단원 수행경력			
	작품경력			
	수상경력	※ 전문분야별로 경력사항은 편집사용 가능		
	전시경력			

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붙임서류

1. 이력서 1부
2. 분야별 회사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전시회 소책자 자료, 졸업증명서 등 경력 관련 증명서류 등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2022.7.28.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건축물미술작품검수단원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절차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시 공지 및 심사단 구성 의무화(제4조)
- 나.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관련 가산점 규정 신설(제6조제1항)
- 다. 건축물미술작품검수단원의 자격 기준 신설(제10조)

인천광역시 군·구 행정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장 유 정 복

2022년 9월 26일

인천광역시훈령 제1246호

인천광역시 군·구 행정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군·구 행정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군수·구청장을”을 “군·구의 군수·구청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를 “분기별 1회 개최하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그 밖에 정책회의”를 “정책회의”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군·구의 표기 순서) 군·구의 표기 순서는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군구소통관 운영)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군·구와 소통·협력하기 위하여 실·국·본부장 중에서 군·구별 군구소통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군구소통관은 별표와 같다.

③ 군구소통관은 지정받은 군·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 지역여론 등을 수렴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소관 업무 실·국·본부장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 1. 시의 지원이 필요한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 2. 재난발생 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3. 군·구에서 지원을 요청한 경우
-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각 부서의 장은 군구소통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군구소통관(제4조제2항 관련)

군·구별	군구소통관(실·국·본부장)
강화군	문화체육관광국장
옹진군	해양항공국장
중구	교통건설국장
동구	도시계획국장
미추홀구	도시재생복지국장
연수구	여성가족국장
남동구	행정국장
부평구	환경국장
계양구	복지국장
서구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개정이유

대부분의 법률에서 ‘군·구’로 표기되었음에도 ‘구·군’으로 호칭되고 있는 관행을 정상적으로 바로 잡고, 시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군·구와의 소통·협력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구의 표기 순서를 정함.(제3조의2 신설)

나. 군·구별로 군구소통관을 지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4조 및 별표)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54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시설계획과(☎440-1713) 및 서구청 도시계획과(☎560-476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9. 26.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산 78-2번지 및 331-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전기공급설비)
- 명 칭 : 검단3구역 외 전기공급설비 지중화사업

3. 면적 및 규모 (변경없음)

- 면 적 : 2,465㎡
- 규 모 : CH 철탑2기, 송전선로 지중화 (L= 1,418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장 정성기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40-1(오류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정 : 2020. 2. 24. ~ 2022. 10. 31.
- 변경 : 2020. 2. 24.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 (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별첨】

1. C/H 부지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C/H#1	서구 왕길동	산78	임야	8,720	1,753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	
		산78-2	임야	222	64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	
		193-3	도로	426	36	인천광역시	-	
		소계		9,368	1,853			
C/H#2	서구 왕길동	331-1	도로	72	10	김호중, (주)디케이그룹	-	
		331-2	잡종지	774	508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	
		331-5	대	237	94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	
		소계		1,083	612			
계				10,451	2,465			

2. 송전선로 경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지중화 송전선로 경로	서구 왕길동	193-4	도로	1,442	26.3	인천광역시	-	
		산78-3	임야	27	6.4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	
		619	도로	2,006	16.8	국(국토교통부)	-	
		164-5	도로	7,427	35.8	인천광역시	-	
		164-114	도로	1,987	111.4	인천광역시	-	
		164-111	도로	9,614	355.5	인천광역시	-	
		163-16	도로	2,099	0.3	인천광역시	-	
		164-24	도로	242	1.6	인천광역시	-	
		136-7	도로	17,736	58.7	인천광역시	-	
		318-3	도로	2,329	16.2	인천광역시	-	
		331-19	대	86	8.8	인천광역시	-	
		331-5	대	237	24.1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	
계				45,232	661.9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55호

오류3 지적재조사지구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의 변경(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명

- 서구 오류3 지적재조사지구

2.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3. 변경내용

지구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필지수	면적(m ²)	필지수	면적(m ²)	
오류3	293	147,609	274	147,609	19필지 감소

4. 토지조서 열람

-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전화032-440-4552~3, 팩스032-440-8682)
- 서구 토지정보과(전화032-560-4667, 팩스032-560-2786)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507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사업자	대표자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자본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비고
주식회사 가치	이성원	2022. 9. 20.	인천220013	450,000,0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28번길 50, WEST동 520호 (송도동, 더샵 송도트리플타워)	

2022년 9월 20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50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변경등록사항 : 기술인력 변경

사업장명 (분야 및 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일자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브니엘네이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제70호)	박정호 · 이주필	2011. 6. 15.	기술인력 변경	한준희 (대기환경기사) [기술사 대체]	좌동
				엄영식 (대기환경기사)	박인영 (대기환경기사)
				손효성 (중급 전력기술인)	좌동
				황금동 (기계 고급기술자)	좌동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509호

압류자동차 공매결과 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자동차)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고번호 : 제2022-3345호(2022.8.25.)
2. 공매대상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총 94대)
3. 관계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71조 및 제78조
4. 결과공고 : 인천시보 및 인천광역시(www.incheon.go.kr) 홈페이지 게시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인천소식⇒고시/공고/시보⇒압류자동차 공매결과 공고 클릭)
5. 공고기간 : 2022.9.21.(수) 16:00 ~ 2022.9.30.(목) 18:00
6. 입찰등록 : 2022.9.13.(화) ~ 2022.9.20.(화) 14:00
7. 낙찰발표 : 2022.9.21.(수) 14:00
8. 공매결과 : 공매공고 차량 94대중 낙찰 93대
1대 공매중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액 완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납세협력담당관 자동차공매 담당 주무관 박은영
(032-440-8445, 8444)로 문의바랍니다.

자동차 공매낙찰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연식	매각예정 가격(원)	매각낙찰 가격(원)	비고
1	89노3131	셀보봉고프런티어내 장탑차	2000	560,000	830,000	
2	인천35더3480	EF쏘나타	2000	400,000	1,069,000	
3	86도2482	포터II냉동탑차(PO RTERII)	2009	720,000	1,560,000	
4	67보5373	그랜저(GRANDEUR)	2015	4,500,000	5,380,000	
5	78다6903	그랜드카니발	2010	810,000	1,820,000	
6	92가9061	포터II(PORTERII)	2005	720,000	960,000	
7	10오3573	SM5LPLi	2007	630,000	789,000	
8	75나5496	그랜드카니발	2008	720,000	2,630,000	
9	22더3972	Focus2.0TDCi	2014	1,800,000	3,900,000	
10	70고9052	그랜드스타렉스(GR ANDSTAREX)	2010	1,350,000	2,500,000	
11	80러7159	포터초장축더블캠오 토메틱	2001	630,000	755,000	
12	86거2381	액티언스포츠	2008	720,000	1,427,000	
13	01노2435	아반떼	1995	300,000	640,000	
14	01우8253	에쿠스	2012	4,000,000	6,780,000	
15	02로9727	세라토	2005	500,000	780,000	
16	02버4243	트라제	2005	700,000	1,015,000	
17	04라1163	캡티바2.0디젤	2017	11,000,000	13,687,000	
18	05가6285	아반떼XD	2006	600,000	1,025,000	
19	05오5297	SM7	2005	700,000	889,000	
20	06소8626	쏘나타	2006	600,000	1,199,000	
21	07라6163	로체	2006	600,000	1,399,000	
22	112고8121	카니발하이리무진	2020	32,000,000	공매중지	체납액 완납
23	12고5925	아반떼(AVANTE)	2010	800,000	1,865,000	
24	12더4008	프라이드	2005	600,000	720,000	
25	12두5152	EQ900	2018	33,000,000	38,380,000	

자동차 공매낙찰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연식	매각예정 가격(원)	매각낙찰 가격(원)	비고
26	12어9226	카이런	2010	800,000	1,360,000	
27	14다9536	SM7	2010	800,000	1,500,000	
28	15다2345	짚 랭글러	2011	9,000,000	13,700,000	
29	15도3769	쏘렌토	2007	900,000	1,410,000	
30	15저9515	모닝	2012	1,000,000	3,410,000	
31	17구5567	SM3	2010	1,000,000	1,252,000	
32	18두4659	옵티마	2001	500,000	1,710,000	
33	20오1359	오피러스	2003	700,000	1,550,000	
34	22구1690	MINI Cooper	2011	1,000,000	2,137,000	
35	24다4182	아반떼	2015	2,500,000	3,251,000	
36	24라4194	벨로스터	2012	1,000,000	2,250,000	
37	27나4451	스파크	2017	2,000,000	4,188,000	
38	27버3672	스파크	2018	4,500,000	5,370,000	
39	27어4080	K9	2015	17,000,000	18,511,000	
40	27오5810	E280	2007	500,000	888,000	
41	30머7154	쏘나타	2011	800,000	2,582,000	
42	30부6940	디스커버리4 3.0D	2011	9,000,000	11,290,000	
43	30수8271	원스톱2.0S디젤	2008	600,000	1,400,000	
44	30오2324	BMW 528i	2011	6,000,000	8,000,000	
45	36거6505	재규어4.2	2005	700,000	3,520,000	
46	36버5963	싼타페	2005	700,000	850,000	
47	36서8676	E280	2005	700,000	985,000	
48	38너1578	쏘나타	2002	500,000	1,710,000	
49	38너6471	렉서스ES300	2003	700,000	810,000	
50	38무6715	스파크 1.0 DOHC	2014	700,000	1,950,000	

자동차 공매낙찰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연식	매각예정 가격(원)	매각낙찰 가격(원)	비고
51	39누7102	스포티지	2007	700,000	1,210,000	
52	40다4581	코란도C	2018	10,000,000	11,970,000	
53	41머7169	300C	2010	1,000,000	1,500,000	
54	41저4219	크루즈1.8DOHC	2011	700,000	1,020,000	
55	42라7613	모닝	2005	500,000	911,000	
56	42오0351	그랜저	2017	8,000,000	9,740,000	
57	43소3711	SM5	2006	700,000	795,000	
58	49우1107	쏘울	2011	800,000	2,200,000	
59	50소0929	쏘렌토	2016	11,000,000	12,111,000	
60	52로9517	체어맨	2007	700,000	1,359,000	
61	52모9665	SM5	2007	700,000	1,130,000	
62	53가5821	뉴아반떼XD	2004	600,000	1,025,000	
63	53마5655	그랜저	2008	800,000	1,199,000	
64	54루6220	원스톱2.0S디젤	2008	700,000	1,310,000	
65	55부4748	벨로스터	2012	1,500,000	2,810,000	
66	56머2850	로체	2010	800,000	1,950,000	
67	58부0883	아반떼	2016	7,000,000	10,900,000	
68	58오3039	제네시스 쿠페	2009	1,000,000	3,270,000	
69	60다2258	체어맨W	2011	1,000,000	1,429,000	
70	60주2792	QM5	2015	5,000,000	6,222,000	
71	61버3541	쏘나타	2008	700,000	1,550,000	
72	62라3627	아반떼	2016	7,000,000	9,800,000	
73	66두5911	베라크루즈	2015	8,000,000	9,900,000	
74	66조5450	K5	2011	1,500,000	3,351,000	
75	68보8550	A645TDIquattro	2015	10,000,000	11,950,000	

자동차 공매낙찰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연식	매각예정 가격(원)	매각낙찰 가격(원)	비고
76	68수6163	레이	2013	2,500,000	4,219,000	
77	69가3815	리오	2001	400,000	599,000	
78	69루3760	카렌스	2002	500,000	770,000	
79	73보3820	갤로퍼II승합	1999	600,000	2,380,000	
80	73수2204	그랜드스타렉스	2010	1,000,000	2,500,000	
81	76저2117	스타렉스	2007	800,000	1,120,000	
82	77버8253	카니발	2007	700,000	1,700,000	
83	79오6062	그랜드 스타렉스	2011	3,500,000	6,777,000	
84	81무4660	포터II	2015	4,000,000	5,460,000	
85	83라9886	봉고III플러스내장차	2013	4,000,000	5,500,000	
86	84더4445	봉고III	2008	700,000	2,370,000	
87	86고7708	봉고III 플러스냉동차	2011	2,500,000	3,167,000	
88	86소8429	액티언스포츠	2009	800,000	1,650,000	
89	86어8795	봉고III	2011	800,000	2,650,000	
90	86오7721	봉고III	2012	2,000,000	3,865,000	
91	87나8879	포터II내장탑차	2011	800,000	2,020,000	
92	92라9687	봉고III	2005	700,000	1,020,000	
93	92수2058	포터II	2006	800,000	928,000	
94	94노4599	봉고III냉동차	2018	12,000,000	15,190,000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511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공고·열람

인고 제2020-279(2020.7.13.)호로 공공청사를 결정하고 인고 제2021-165 (2021.6.7.)호로 실시계획 인가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인천소방학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와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9. 26.

인 천 광 역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	공공청사	인 천 소방학교	강화군 인화리 528-4번지 일원	29,964	감)30	29,934	인고 제2020-279호 (2020.7.13.)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인 천 소방학교	• 면적 : 29,964㎡→29,934㎡ (감30㎡)	• 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감소

□ 실시계획인가(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

- (기정)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206-1번지 일원
- (변경)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528-4번지 일원
- ※ (변경사유)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 변경(위치 동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인천소방학교)
- 명칭: 인천소방학교 신축이전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면적: (기정) 29,964㎡ ⇒ (변경) 29,934㎡(감30㎡)
- ※ (변경사유) 지적측량 성과 반영
- 규모
- (기정) 본관동(주1동), 옥내훈련장(주2동), 수난구조훈련장/구급교육센터(주3동), 소방종합훈련탑(주4동), 관사 및 생활관(주5동), 후생관(주6동), 관리시설(주7동), 경비실(부1동)
- (변경) 본관동/수난구조훈련장(구급교육센터)/생활관 및 후생관(1동), 관사동(1동), 소방종합훈련탑(1동), 관리시설(1동), 기타시설(1동)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시장(인천소방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정) 2021. 6. 7. ~ 2023. 12. 31.
- (변경) 2021. 6. 7.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구분	행정구역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면	리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합 계			기정			605,954	29,964				
			변경			29,934	29,934				
1	기정	양사면	인화리	산182	입	9,818	5,869	유**	김포군 **면 **로**번길 **	70/ 1485	
								이**	경기도 **시 **구 **로 **, **동 **호	283/ 1485	
								이**	서울특별시 **구 **로 **길 **, **동 **호	283/ 1485	
								이**	서울특별시 **구 **로 **, **동 **호	283/ 1485	
								이**	서울특별시 **구 **로 **길 **, **동 **호	283/ 1485	
	이**	서울특별시 **구 **로 **길 **, **동 **호	283/ 1485								
변경	양사면	인화리	528	2	입	5,766	5,766	인 천 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2	기정	양사면	인화리	산186	4	입	1,279	1,279	김**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_**(**동)	1/2
									삼**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층(**동)	1/2
변경	양사면	인화리	528	3	입	1,244	1,244	인 천 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3	기정	양사면	인화리	산206	1	입	594,857	17,615	인 천 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 천 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변경	양사면	인화리	528	4	입	22,924	22,924	인 천 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8.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02, 남동구 정각로 29)
- 강화군청(도시개발과, 032-930-3807,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10. 관계서류: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참조

시설배치계획도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51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변경등록사항 : 기술인력 변경

사업장명 (분야 및 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일자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주)삼공이엔피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제59호)	조홍엽	2009. 7. 20.	기술인력 변경	강경문 (대기환경기사) [기술사 대체]	좌동
				이보은 (대기환경기사)	허성규 (대기환경기사)
				배현수 (일반기계기사)	좌동
				한형수 (전기 고급기술자)	좌동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515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21.

인 천 광 역 시 장

변경등록 사항 : 소재지 변경

등록번호 (등록일)	단체명	변경사항			주관부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008-0- 인천광역시-13호 (2008.2.14.)	사단법인 인천풍물 연구보존회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669번길 6 (주안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586번길 84, 101호(주안동)	문화유산과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534호

2022년 제 9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6항에 의하여 '2022년 제9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장

1. 심의일시 : 2022. 9. 21.(수) 14:00
2. 심의장소 : 인천광역시청 영상회의실
3. 심의작품 : 총 30작품
4. 심의결과 : 가결 27작품(조건부 12작품, 권고 6작품 포함), 부결 3작품
5. 작품별 심의결과 : 첨부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과(☎ 032-440-39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작품별 심의 결과>

□ 30작품 중 가결 27작품(조건부 12작품, 권고 작품 포함), 부결 3작품

연 번		설치지역	종류	작 품 명	작품이미지	심의결과		비고
건물	작품					가결	부결	
1	1	남동구 논현동 649-1	회화	빛-자작나무		○		권고
	2		회화	빛-북한산		○		권고
	3		회화	루이 메이양		○		권고
	4		회화	루이스푸네		○		권고
	5		회화	사유의 흔적 I		○		권고
	6		회화	사유의 흔적 II		○		권고
2	7	남동구 구월동 70-16	조각	ECO FLOW-유희		○		조건부
3	8	계양구 효성동 324-6번지(A블록)	조각	희망의 정원		○		
	9		조각	화이트 웨이브		○		조건부
4	10	송도동 179-4	조각	원에서-자연까지		○		
	11		회화	Moment-1		○		조건부
	12		회화	Moment-2		○		조건부
	13		회화	Situation		○		조건부
	14		회화	Untitled		○		조건부
	15		회화	Field		○		조건부

연 번		설치지역	종류	작 품 명	작품이미지	심의결과		비고
건물	작품					가결	부결	
	16		회화	해뜨는 마을		○		조건부
6	18	계양구 효성동 324-6번지 (B블록)	조각	행복한 나날들		○		
7	19	서구 마전동 980-8,9	조각	raindrop		○		
8	20	운서동 3093-4	조각	Moment_마법의 순간		○		조건부
	21		회화	생명성		○		조건부
9	22	서구 불로동 불로지구 9블록 1,2롯데	조각	Dreaming Seeds (꿈꾸는 씨앗)			○	
	23		조각	Metaphor (공간의 메타포)			○	
10	24	검단신도시 C5-1-3BL	조각	Seed of Life		○		
11	25	부평구 부평동 515-1	회화	Flashback-2		○		
12	26	연수구 선학동 151-3	조각	世上の 始作 (오방색돌)-ROOT			○	
13	27	미추홀구 도화동 377-1	조각	발아(發芽)		○		
	28		조각	양가적 풍경_the ambivalent existence		○		
	29		회화	자연율-심상풍경 I		○		조건부
	30		회화	자연율-심상풍경 II		○		조건부
14	31	서구 루원시티 일반상업용지 5-1	부조	Ocean of Stars 2208-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53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공고·열람

광역시도 58호선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변경)의제를 위해 같은 법 제2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26.

인천광역시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 치	⑥면적(m ²)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경과지	⑩총연장(km)
기정	광역시도	58호선	금곡동~대곡동간	금곡동 일원	175,767.7	대곡동 700-2	금곡동 312-34	-	3.22
변경	광역시도	58호선	금곡동~대곡동간	금곡동 일원	175,323.6	대곡동 700-2	금곡동 312-34	-	3.22

○ 변경사유

- 주민건의사항 반영

- 부체도로(#1, #4) 연장 및 추가설치(#10, #12), 부체도로 용지편입 최소화 등

- 설계VE, 건설기술심의 결과 반영

- 마전터널 깎기부 사면계획 변경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 마을 진출입로 설치 및 마전2교차로 계획 반영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 사업시행 기간(변경): (당초) 2020. 6.29.~2023.12.31. / (변경) 2020. 6.29.~2026.12.31.

○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 열람기간: 2022. 9.26.~2022.10.11.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도로과,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서구청 도시계획과

2. 실시계획인가(변경)

○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대곡동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3-24호선) 사업
- 명칭: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의 면적(변경) 및 규모(변경 없음)

- 면적: (당초)175,767.7㎡ → (변경)175,323.6㎡
- 규모: L=3.22km, B=26.5m (왕복4차로)

○ 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정각로 29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2020. 6.29. ~ 2023. 12.31. → (변경) 2020. 6.29. ~ 2026.12.31.

- 변경사유: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결과(터널시공 48개월), 설계VE 및 건설기술심의 결과, 주민건의 사항 부체도로 공사기간 반영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과 같음(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3. 관계서류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 도로과(☎032-440-3722), 종합건설본부 토목부(☎032-440-5211),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63)

4.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붙임: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1부.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53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 9. 23.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변경 사항

구분	등록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비고
당초	제2000-0- 인천광역시-24호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중구지회	한태규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13번길 2 수협3층	
변경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38번길 6-1 (북성동 1가)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2-228호

보상계획공고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이승훈 역사공원 주변 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26.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1. 공익사업 개요

- 가. 사업명 : 이승훈 역사공원 주변 도로 확장공사
- 나.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사거리 주변 무네미로 및 백범로
- 다. 사업규모 : L=410m
 - 무네미로(광로3-15호선) : L=260m, B=7m 확장(2차로)
 - 백범로(대로1-14호선) : L=150m, B=3.25m 확장(1차로)
- 라. 사업기간 : 2021. 3. ~ 2023. 4.
- 마.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손실보상업무 수행기관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2. 보상계획

- 가. 보상대상 : “토지 조서” 참조
 - ※ 편입 토지 지번 및 면적은 지적 분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 나. 보상방법 및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요청 (보상금개별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 재결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 다. 보상시기 : 열람기간 경과 후 감정 평가하여 보상협의안내 개별통지(23년 1월 예정)
- 라. 보상액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 단,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 마. 보상금지급 : 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2. 09. 27(화) ~ 2022. 10. 14.(금) ※ 14일 이상(토·일 포함)

나. 열람장소 : 인천종합건설본부(3층) 토목부 토목보상팀 (☎ 032-440-5167)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다. 열람방법 : 소유 관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라. 이의신청방법 : 토지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
※ 동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4. 편입 토지(총 13필지)

소재지	지 번	기 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13필지)	662-11, 662-12, 662-3, 662-4, 661, 660-3, 660-12, 659-15, 659-7, 659-3, 660-2 660-13, 659-16	

5. 지장물 등 : 위 토지상의 대상 지장물 등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www.incheon.go.kr) 및 개별 통지문 참조

6.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구비서류는 손실보상협의 안내 시에 개별통지 합니다.

다.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보상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입 토지조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승훈 역사공원 주변 도로 확장공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자	권리관계
		당초	변경			성명	성명	
1	남동구 장수동	662-11	662-11	전	76	윤*영		
2		662-12	662-12	전	107	윤*환		
3		662-3	662-3	창	56	윤*환		
4		662-4	662-4	답	92	윤*환		
5		661	661	답	115	윤*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농업****, 부평농업****	압류,근저당권,지상권
6		660-3	660-3	창	75	윤*자		
7		660-12	660-12	전	208	윤*자		
8		659-15	659-15	답	80	윤*자		
9		659-7	659-7	답	50	윤*자		
10		659-3	659-3	답	30	김*원 외6	한국가스공사, 조*임	근저당권,지상권
11		660-2	660-2	전	176	김*원 외7	조*임	근저당권
12		660-13	660-13	전	9	윤*자	인천시 남동구, 부평농업****	압류,근저당권,지상권
13		659-16	659-16	답	124			

입법예고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121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에 첫 발을 내딛는 신규 직원들에 대한 격려 규정을 명시하여, 대상자의 공직사회 적응 및 따뜻한 조직문화 조성을 도모함으로써 실질적인 직원복지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사업 중 격려대상 공무원의 범위에 신규공무원을 추가함.

(안 제11조제5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참조: 총무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정각로 29, 본관 10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도경(전화번호 032-440-2213, 팩스번호 032-440-8640, 전자메일 kaedo@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www.incheon.go.kr/legal> (자치법규입법예고))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호 중 “정년·명예퇴직공무원”을 “신규·정년·명예퇴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 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시행할 수 있다. 1. ~ 4. (생략) 5. <u>정년·명예퇴직공무원에 대</u> <u>한 격려</u> 6. ~ 9. (생략)	제11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신규·정년·명예퇴직공무원</u> ----- 6. ~ 9.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